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98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훈
김위상 · 구자근 · 김성원
최은석 · 박수민 · 박충권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해당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재혼”을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재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혼인기간은 시행일 이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 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 다. 1. (생 략) 2. <u>재혼한 때</u> (사실상 혼인관계 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5. (생 략) ② (생 략)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u> <u>이 재혼</u> -----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